

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

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9. 17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장



1. 건 명 :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
2. 근 거 : 고용보험법 제42조, 동법 시행령 61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송달 불능 사유
양*수	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택지1길 (이하생략)	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알림	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	수취인불명

4. 공고기간 : 2021. 9. 17. ~ 2021. 10. 1. (15일간)
5.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(음성고용복지+센터)을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6. 기타 사항은 음성고용복지+센터 양어진 주무관(☎043-880-861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